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 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규정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07호)

2026. 9.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규정 (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의3 신설)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4. 29.

다. 회 부 일 :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판문화산업의 지원·육성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출판물은 지식·정보·문화를 전달하는 핵심 매체로서 국민의 지적·문화적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그러나 장애인은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출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출판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원 규정(안 제4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의3 신설)

개정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 ① (생략)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u><신설></u> 9. (생략) ③ · ④ (생략) <u><신설></u>	제4조(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8. (현행과 같음) 9. <u>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u> 10. <u>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출판물에 접근하거나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u> 11.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3(<u>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u>) 국가는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

현행	개정안
	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및 정보접근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에서는 국가가 문화산업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콘텐츠접근권 보장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도서관법」 역시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정보접근권 보장 및 관련 사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및 정보접근권 보장 관련 규정]

법률명	조문 내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법	제22조(정보에의 접근)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 등 민간 사업자에게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또

	는 폐쇄자막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을 방영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 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음성변환용 코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표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과 점자 및 인쇄물 접근성바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문화환경 정비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3년마다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이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의2.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장에 관한 사항 제26조(이용자 보호시책 등) ② 정부는 경제적·지역적·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콘텐츠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기 어려운 자들이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도서관법	제6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하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라 한다)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제공 및 공동 활용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편의시설의 확충과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의 제안이유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점자, 음성, 화면해설 등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형태의 출판물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이 제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은 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출판문화산업 진흥계획에 포함하고,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

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보이며, 이를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의 지식정보 접근권 강화를 통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애인의 출판물접근권 보장을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79

○ 전자책 제작 지원

- 「독서문화진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전자책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 개선 추진, 고품질 디지털 콘텐츠 확충을 통한 디지털 출판시장 활성화 도모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4년	1,2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전자책 1,401종 제작 지원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166종 포함)
'25년	1,524		전자책 1,382종 제작 지원 (장애인 접근성 전자책 172종 포함)
'26년	2,024		추진 중

○ 오디오북 제작지원

- 장애인 접근성 개선 및 고품질 오디오북 공급을 통한 디지털 출판시장 활성화 위한 오디오북 제작비·홍보 지원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4년	1,5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오디오북 298종 제작 지원,
'25년	1,500		오디오북 317종 제작 지원
'26년	2,250		추진 중

○ 장애인 접근성 뷰어 개발 지원

	예산(단위:백만원)	사업수행기관	주요내용(실적)
'24년	1,200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뷰어개발 및 유통사 교보 알라딘 개발 지원
'25년	1,200		뷰어개발 및 유통사 교보 알라딘 2개사 개발 지원(계속)
'26년	500		추진 중